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 연구

김기선* · †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사안전교육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요약 :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선내안전보건, 재해율, 직무상 사고, 해사노동협약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 연구

발표자 : 김기선, 전영우 교수

2020 항해항만학회 풀널 세션

1. 문제의 제기

□ 사고현황 및 재해율

➤ 선원의 재해율

1. 문제의 제기

□ 사고현황 및 재해율

➤ 선원의 재해율

구 분 년도	전체 재해율 (천인율)	직무상 재해율 (천인율)	선호수 (천인율)	합계	직무상					직무외					기타
					계	실종	사망	상병	장해	계	실종	사망	상병	장해	
2019년	11.2 (112.4)	10.0 (100.3)	34,123 (100.3)	3,834	3,423	5	64	3,333	21	410	29	374	7	1	
2018년	8.6 (8.5)	6.7 (67.4)	34,751 (67.4)	2,984	2,343	2	85	1,734	522	641	18	33	589	1	
2017년	7.5 (7.8)	6.3 (63.2)	35,096 (63.2)	2,759	2,218	24	58	1,821	315	541	32	508	1		
2016년	7.3 (7.3)	6.0 (60.2)	35,685 (60.2)	2,611	2,147	10	67	1,957	113	424	14	410		40	
2015년	8.4 (8.4)	6.7 (66.7)	3,6976 (66.7)	3,132	2,467	7	89	2,247	124	418	13	401	4	247	

- 재해율(천인율): 근로자 100(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2018년 기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천인율)과 일반 산업재해율(천인율)은 각 67.4(천인율)와 5.36으로 약 12.6배 높은 재해율을 보임
-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이행 노력의 결과임

2020 항해항만학회 풀널 세션

2.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현황

□ 선원법

➤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 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등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구체적으로 경한 해양수산부령이 없음
-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경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식 등 구체적인 보고 사항이 없음
 - ⑤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를 위한 선박소유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이로 인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2020 항해항만학회 풀널 세션

* 교신저자 : jyw76@kmou.ac.kr

